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8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이영숙 (-),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 김창수(기소), 임여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배성렬
변호사 박상욱
판 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행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약칭)에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택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회사가 터파기 공사에 착수할 무렵부터 용산구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계속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해자 회사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과 장래 예측되는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 회사는 2018. 8. 24.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다음 “2. 범행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 현장의 진출입로에 주정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공사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가로막기로 결의하였다.

나. 범행내용

1) 피고인은 2018. 8. 25. 07:43경 일대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 승용차를 도로의 중앙에 정차하여 두고, 이어 같은 날(2018. 8. 25.) 07:59경 피고인의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현장 바로 앞 모퉁이 도로에 주차하여 둔 공사관계자의 승용차가 떠나자 그 모퉁이에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 무렵부터 5시간 동안 계속 주정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트레일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도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6:48경 위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출입을 막기 위해 위 가항 기계와 같이 공사 현장 바로 앞 모퉁

이 도로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주차 금지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 관계자로부터 그곳에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위 펜스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같은 날 17:39에서야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의 차량 이동 요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 주차함으로써 그 동안 피해자 회사의 믹서트럭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도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